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마.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사.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제2항)

아.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할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자.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 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2항)

차.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음.(안 제15조)

3. 제정근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 4. 11 법률 제8361호) 제3조

나. 「지방자치법」(2009. 4. 1 법률 제9577호) 제22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2010년 본예산 편성(기획예산과)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09. 8. 6 .~ 8. 16.(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 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의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조세 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모델 발 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